

마을개황

<목 차>

- | | |
|-----------|---------|
| 1. 자연환경 | 5. 산업환경 |
| 2. 역사적 배경 | 6. 생활풍속 |
| 3. 산수현황 | 7. 비석 |
| 4. 인문환경 | 8. 세시풍속 |

1. 자연환경

봉성리는 애월읍에 위치하며, 구물동, 신명동, 중화동, 서성동, 동개동의 5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애월읍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오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동쪽으로는 약 2km 지점에 납읍리가 있고, 서쪽으로 약 1.5km 지점에 한림읍 신흥리가 있고, 동남쪽 약 1km 지점에 어음리,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과지, 금성리, 서북쪽 약 2km 지점에 귀덕리가 있다. 전체면적은 3.254ha로, 밭 641ha, 논 1ha, 과수원 54ha, 임야 1510ha, 기타 1048ha이고, 주요작물은 감귤, 보리, 축산, 야채, 잡곡 등이다. 중산간 도로(국도 16호선)가 마을을 통과하고, 애월읍 관내 순환 버스가 매 한시간 간격으로 운행하므로 교통이 편리하다. 용수상황을 살펴보면 중산간 마을이어서 식수가 부족해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생활용수로 사용하며 봉천수에 의존하여 오다가 1966년에 밭이악 수자원을 개발하여 어승생수를 연결하였고, 1989년에 지



마을전경

하수를 개발하게 되어 식수문제가 해결되었다.

2. 역사적 배경

1) 설촌유래

봉성리는 고려 희종7년(1211) 도내산리(道內山里)로 표기되었으며 1895년에 도내산리를 어도리(於道里)로 고쳐 불렀다. 고려 공민왕 원년에 도내봉에 봉수대를 설치하여 연락망으로 이용하였고 3833번지 일대가 관전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조선 선조 33년(1600) 구물동에 훈련원 봉사 남평 후인 문공명의, 서근이동에 진주 후인 강공 두형, 첨지 대구서수발부자와 상시동에 부저리 부자 허정, 직근이(힘센장사) 등 수맥을 찾아 2~3가구씩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논밭동네 고인돌 등을 보면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다. 문헌상에는 어도 강씨가 봉성리를 설촌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전에 서씨와 문씨가 먼저 살았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서씨는 자손이 없어서 대가 끊기었고, 강씨가 문씨 집안에 장가를 들어 정착한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제 침략과 4·3사건으로 어도리에 좋은 길조나 뛰어난 인물이 없어

1953년도에 어도리 마을총회에서 리명개정위원회 15인을 선출하여 논의 끝에 봉성리(鳳城里)로 리명을 고치고 1993년도에 북제주군조례로 공부상 봉성리로 바꾸었다. 봉성리는 리명은 어도봉이 봉황새가 알을 품은 형상이라고 하여 지어진 것이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한때 1구, 2구로 구분된 바 있었다. 1구는 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몰동, 화전동 5개의 자연마을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2구는 자이동, 고도동, 마전동, 상시동, 마당이동, 금천동이었으나, 1948년 4·3사건으로 인하여 각자로 분산 소개되었다. 같은 해 동개동에 집단으로 마을을 재건하였는데, 1950년 2구가 1구와 통합됨에 따라 신명동으로 이름하고 현재는 5개의 자연마을(동개동, 서성동, 중화동, 구몰동, 신명동)을 형성하고 있다.

* 신명동 설촌유래

봉성리 신명동은 1948년 이전에는 애월면 열리왓 · 지름기 · 물밭 · 고드리왓 상시머를 등 6개의 자연부락으로 100여 가구가 터전을 일구며 살아왔다. 1948년 4·3사건 소개령으로 인하여 어도2구에 거주하던 100여 가구의 전주민들은 인근마을인 어도1구 현재 봉성리와 이웃마을에 이주하여 살아왔다. 1949년 3월경 어도2구 전주민이 회의를 한 결과 현재 봉성리 3147번지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한 가구당 100평 단위로 분할 배정하여 어도2구 마을을 재건하게 되었다. 1950년 어도리 합병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구와 2구를 합병하기로 결의하고 행정구역은 어도리로 명하고 어도2구는 신명동으로 바꾸게 되었다. 1958년 어도리 최초로 신명동 청년회를 조직하여 명칭을 신진회로 정하였다. 1962년 마을 총회를 소집하여 3270번지 일대를 매입 전동민이 연못을 조성하여 기축 용수 및 화재 시 방화수로 이용하였다.

1964년 청년회 총회에서 신명동 사무소를 건축하기로 결의하고 회관전립 자금을



귀도노미(행계지전, 귀덕경)

마련하여 봉성리 3271번지의 토지를 매입 동사무소회관을 건립 준공하였다. 1996년 마을 총회에서 결의하여 연못을 매립하고 현재의 공원조성과 정자를 짓고 100여 가구의 신명동민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어도봉 서북쪽에서 북쪽으로 2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이 곳은 봉성이 최초 사람이 살았다고 예측하고 있는 곳이다. 1600년 이전에 봉성리 부근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이 곳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3. 산수현황

1) 오름

(1) 한대오름(한대악)

- 위치 : 봉성리 산1번지 일대, 어음리 산25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원추형
- 표고 : 921.4m
- 비고 : 36m
- 저경 : 407m
- 둘레 : 1,526m
- 면적 : 132,263m²

명칭의 유래를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오름의 이름으로 보면, 한라산(漢拏山)과 연관지울 수 있을 것 같다. 즉, 한라산은 ‘은하수를 끌어당길 수 있을 만큼(雲漢可擎引也) 높은 산’이라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면 큰 은하수 · 은하수 산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오름은 그 모양새가 해안에서 보면 높고 큰대서 한대악(漢大岳 · 漢岱岳)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삼형제오름 서쪽 약 1.5km 지점에 위치한 오름으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경

사를 갖고 있으며 2개의 봉우리가 산 정부에 이어져 있는 형태이다. 전사면이 해송, 삼나무, 잡목 등의 숲을 이루고 있으며 동쪽 자락에 넓은 습원과 물웅덩이가 많다.



한대오름

(2) 다래오름

- 위치 : 봉성리 산25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북동향)
- 표고 : 696.5m
- 비고 : 87m
- 저경 : 589m
- 둘레 : 2,001m
- 면적 : 231,752m²

예전에 다래낭(다래나무의 제주어)이 많이 자라났다 하여 다래오름, <달·다래·달이·래 ; 높다·산·고귀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고구려어> + 오름, 이를 한자로 다율악(多栗岳)이라 표기하고 있다.

넓따란 공초왓의 서녘, 전형적인 반달 모양을 하고 있는 오름이다. 한라산의 한 줄기가 윗세오름~삼형제오름(일명 알세오름)~노로오름~한대오름으로 맥을 형성하면서 다래오름으로 이어지고 그 맥은 다시 빈네오름, 폭낭오름, 북돌아진오름, 괴오름 등의 오름군을 만들어 놓았다.

이 오름 기슭에는 공초왓이 있다. ‘공초’는 곱취, ‘왓’은 밭의 제주어로서 즉 ‘곰취가 자라나는 밭’의 의미이다. 곰취는 깊은 산 속에 자라는 취나물의 하나로 어린잎을 나물로 하여 먹으며 기침·천식 등에 효험이 있는 약초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에 이 일대에는 공초가 군락을 이루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공초가 자라던 공초왓은 모두 개간되어 농경지



다래오름

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공초왓까지는 솔도¹⁾ 또는 서부관광도로와 산록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농로가 연결되어 있어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정상을 중심으로 굼부리와 바깥 등성이의 식생은 전연 딴판이다. 북동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굼부리에는 산딸나무, 때죽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

들이, 남서사면은 여러 잡목들이 가시덤불에 어우러져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다. 정상에서는 사방이 조망되어진다.

(3) 검은돌먹오름

- 위치 : 봉성리 산1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북향)
- 표고 : 712.4m
- 비고 : 87m
- 저경 : 548m
- 둘레 : 1,633m
- 면적 : 120,797m²

이 오름의 유래에 대해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름의 지세로 보아 고조선 시대부터 쓰여온 신(神)이란 뜻의 검(검·감·곰·굼)+은+들(들판)+먹(중요한 통로의 좁은 곳을 뜻하는 <목>의 변이)로 분석되어 신령스런 들판의 목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를 한자로 흑월악(黑月岳)·거문돌악(巨門頓岳)으로 표기하고 있다.

1) 화전마을의 옛 이름으로서 이 곳이 예전에 솔각(관솔의 제주어), 솔잎, 솔똥(솔방울의 제주어) 등을 채취하기 위한 '도(어귀, 통로의 제주어)'란 뜻에서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남서쪽 기슭은 드넓은 <공초왓>에, 북동쪽은 <다래오름북동쪽Ⅱ>에 맞닿아 있고 그 너머에는 <한대오름>이 자리하면서 곧장 한라산 자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오름과 <다래오름북동쪽Ⅱ>의 기슭은 어깨를 마주 하듯 붙어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오름과 결의 <다래오름북동쪽Ⅱ>를 함께 묶어 <거문들먹>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보아진다.

이 오름과 <다래오름북동쪽Ⅱ>의 등성이는 물론 정상부까지 여러 기의 묘가 있는데 비문에는 두 오름을 구별짓지 않고 모두 <흑월악(黑月岳)·거문돌악(巨門石岳)> 등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1997년도에 제주도에 의해서 제주 오름을 조사하면서 두 오름을 분리하여 현황을 밝혔고 이 때 이 오름 동쪽의 오름에 대해 적당한 이름을 짓지 못하자 이 오름은 <거문들먹>의 원래 이름을, 결의 오름은 <다래오름북동쪽Ⅱ>로 명명한 것으로 추측되니 이 오름의 별칭은 <다래오름북동쪽Ⅰ>이 되는 것이다.

(4) 빈네오름(차악, 잠악)

- 위치 : 봉성리 산5-2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남서향)
- 표고 : 658.6m
- 비고 : 93m
- 저경 : 699m
- 둘레 : 2,215m
- 면적 : 359,116m²



검은들먹오름



빈네오름

봉성리 화전동 동남쪽에 위치한 오름으로 길게 이어진 두 봉우리가 남서쪽으

로 침식되어 갈라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으며 남사면은 가파르고 서사면은 완만한 풀밭을 이룬다. 봉우리쪽 바위가 쪽진 머리를 빙네(비녀)를 꽂은 모습으로 보인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 있고 정상의 남쪽 봉우리에 남쪽으로 트인 자그마한 인공굴과 동사면 아래쪽 숲속 벼랑진 곳에서 오름 옆구리를 뚫고 들어가면 3개의 인공동굴이 있으며 이것들은 일본군이 파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5) 폭낭오름(팽목악)

- 위치 : 봉성리 산43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복합형
- 표고 : 645.5m
- 비고 : 76m
- 저경 : 997m
- 둘레 : 2,888m
- 면적 : 587,171m²

서부관광도로변 효명목장 진입로로 들어가면 봉성리 화전동 진입전 도로 좌측 뒤편에 위치한 오름이다. 정상부에는 하나의 말굽형 화구와 2개의 원추형 화구로 이루어진 형태의 복합형 화산체로, 복수초 군락지가 있으며 전사면이 완만한 경사와 풀밭을 이루며 정상부는 얕게 우뚝져 가시덤불과 잡초



폭낭오름

가 우거져 있다. 화전동 쪽의 기슭은 목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산뽕나무, 분단나무, 자귀나무, 보리수나무, 꽁꽁나무, 그리고 곁의 괴오름 쪽에는 환경부 지정 특정 야생물(식-122)인 갯취(안자리풀)가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큰 폭낭(팽나무)이 있어서 폭낭오름이라 불리우고 있다고 한다.

(6) 괴오름(괴미오름, 묘악, 동물오름)

- 위치 : 봉성리 산41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북향)
- 표고 : 653.3m
- 비고 : 103m
- 저경 : 862m
- 둘레 : 2,600m
- 면적 : 379,587m²



괴오름

오름의 모양새가 마치 괴(고양이의 옛말)와 비슷하다 하여 괴미오름, 이를 한자로 묘악(猫岳)이라 하고 있다. 북쪽으로 향한 말굽형 굼부리가 가지런히 자리하면서 자연림이 무성하고 그 아래에는 이른봄에 꽃을 피우는 노란꽃의 복수초가 지천(至賤)으로 자라나고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남쪽은 등성이에 들판과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남쪽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 남쪽은 등성이에 들판과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있고, 남쪽에는 청계천이 흐르고 있다.

(7) 북돌아진 오름

- 위치 : 봉성리 산41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북서향)
- 표고 : 643m
- 비고 : 118m
- 저경 : 735m
- 둘레 : 2,177m
- 면적 : 338,981m²



북돌아진 오름

오름 정상부에 있는 커다란 암벽이 멀리서 보면 마치 북(鼓)이 돌아져(매 달리다·걸려있다의 제주어)있는 모양과 같다고 하여 ‘북+돌아진+오름’이라 하고 있다. 정상에서 남사면 쪽으로는 수직의 벼랑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로는 소나무를 비롯한 자연림과 가시덤불이 뒤엉켜 자라나고 있다. 남사면 기슭 아래에는 자그마한 내(川)가 동~서로 이어지고 있는데 내를 중심으로 한 주위의 식생(植生)은 색다름을 준다. 북동쪽 사면에도 자연림이 무성하고 그 기슭은 괴오름과 맞닿아 있다. 뿐로 보이는 두 개의 정상은 등성이로 이어지면서 고개턱을 이루고 있다. 주봉인 동쪽 봉우리는 북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굼부리를, 서쪽 봉우리는 북서쪽으로 향한 말굽형 굼부리를 각각 지닌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굼부리의 굽은 정도가 낮고 온통 자연림으로 덮여있어 그의 실체를 확인하기가 수월하지 않다.

(8) 새별오름(효성악, 신성악)

- 위치 : 봉성리 산59-8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복합형
- 표고 : 519.3m
- 비고 : 119m
- 저경 : 954m
- 둘레 : 2,713m
- 면적 : 522,216m²

서부관광도로변 시온목장 입구 서쪽 도로연변에 위치한 풀밭오름으로 남쪽 봉우리를 정점으로 작은 봉우리들이 북에서 서로 타원을 그리며 솟아있다. 서사면으로 넓게 벌어진 말굽형 화구와 북사면 기슭에 작게 패인 소형의 말굽형 화구로 보아 복합형 화산체로 볼 수 있으며 북쪽사면에 공동묘지가 있고 이달봉(서쪽)과 접해있고 매년 음력 1월 정월대보름을 즈음하여, 성대하게 들불축제 행사를 하는 곳이며, 샛별과 같이 외롭게 서 있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새별오름은 고려조 최영 장군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내려와 전투를 치른 곳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1275년(충렬왕 1년)부터 제주도는 고려에서 분리되어 원(몽골)에 예속되었다. 이후 100년 동안 원나라의 지배하에 목마장(牧馬場)이 되었는데 이 때 들어온 원나라 목자들의 횡포로 제주도민들은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원(元)이 망하고 명(明)이 선 이후에도 그들은 계속 제주도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렸는데, 이것이 곧 ‘목호의 난’이다. 이 ‘목호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최영장군은 1374년(고려 공민왕 23년)에 제주도로 출정해서 명월포로 상륙하여 새별오름에서 그들을 소탕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새별오름

(9) 이달오름(이달봉)

- 위치 : 봉성리 산71-1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원추형
- 표고 : 488.7m
- 비고 : 119m
- 저경 : 678m
- 둘레 : 2,015m
- 면적 : 250,204m²



이달봉

이(二)+달(높다·산의 고어)+오름으로 분석되어 두 개의 높은 봉우리로 이뤄진 오름으로 해석되어진다. 한자로는 이달봉(二達峰)으로 표기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로 널리 알려진 새별오름 북서쪽 너머에 있는 오름이다. 오름 북쪽 기슭을 지나는 지방도로(이시돌목장~애월읍 어음리)에 세워진 오름 표지석에는 “애월읍 봉성리에 있는 표고 489m(비고 119m)의 오름이다. 이 오름

은 새별오름과 이웃해 있으면서 2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는 원추형의 쌍봉이 화산체이다. 북쪽 봉우리는 이달이총대봉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표고는 456m(비고 85m)이다. 두 개의 봉우리로 된 오름이라 하여 이달이오름이라고 했다고 하나 확실하지 않다. 이달이총대봉의 정상부에는 용암 유출 혼적인 화산암이 노출되어 있으며 오름 대부분이 풀밭을 이루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10) 이달이 총대오름(이달이총대봉)

- 위치 : 봉성리 산71-1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원추형
- 표고 : 456m
- 비고 : 86m
- 저경 : 448m
- 둘레 : 1,198m
- 면적 : 104,258m²

이(二)+달(높다 · 산의 고어)+총대+오름으로 분석되어 마주한 이달오름에 견주어 그 모양새가 총대와 비슷하다 이달총대오름 · 이달이총대봉이라고 있다. 전사면은 이달오름과 같이 소나무와 삼나무가 주로 자라나고 있으나 이달오름에 비하여 풀밭이 많은 편이다. 정상부에 용암유출흔적인 화산암이 노출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벼랑을 이루고 있다.

(11) 가메오름

- 위치 : 봉성리 산124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복합형
- 표고 : 372.2m
- 비고 : 17m
- 저경 : 272m

· 둘레 : 795m

· 면적 : 28,371m²



가메오름

오름의 모양새가 가메(釜)의
제주어)와 비슷하다 하여 가메오름 ·
가마오름, 이를 한자로 부악(釜岳)이라
하고 있다.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북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누운오름

과 맞닿아 있는 오름으로서 서사면은 한림읍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부
관광도로와 봉성리를 잇는 군도(郡道)는 이 오름과 곁의 누운오름 사이를 가
로지르고 있다. 이 오름에는 쌍둥이의 아담한 원형분화구 2개가 야트막이 모
습을 감추고 있으며 큰 분화구의 직경은 25m 정도이고 화구외륜에는 용암노
두도 관찰되며 오름사면은 풀밭을 이루고 있다.

(12) 눈오름

· 위치 : 봉성리 2952-2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북향)

· 표고 : 131.1m

· 비고 : 31m

· 저경 : 384m

· 둘레 : 1,030m

· 면적 : 51,57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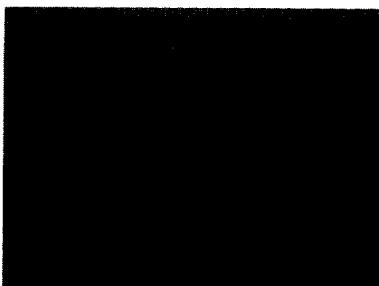
눈오름

오름의 모양새가 누어있는 형체를 하고 있어 ‘누운+오름’의 축약으로 눈오
름 · 논오름, 이를 한자 노은봉(老恩峰)이라 표기하고 있다. 애월읍 봉성리 서성
동 남쪽 약 1km 지점에 위치한 오름으로 북쪽으로 반달모양의 말굽형 화구를
이루며 동, 서, 북사면에 해송일부가 식생하고 있고 정상부를 제외한 지역은 과

수원과 경작지가 조성돼 있다. 이 오름의 흙은 붉은 송이로 구성되어 있다.

(13) 어도봉(도노미, 도내산, 도내뫼, 도내봉, 어도오름)

- 위치 : 봉성리 3920-24번지 일대, 금성리 22번지 일대
- 형태적 분류 : 말굽형(북향)
- 표고 : 143.2m
- 비고 : 73m
- 저경 : 747m
- 둘레 : 2,329m
- 면적 : 376,225m²



어도봉

봉성리 어도초등학교 길건너 서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위치한 오름으로 북쪽으로 벌어진 말굽형 화구를 이루고 있다. 동서 두 개의 봉우리 중 서쪽 봉우리가 정상이고 이 곳에 조선시대 봉수대 설치흔적이 남아있고 서쪽 봉우리 남서중턱에 도립사절과 절새 미터샘이 있다. 해송, 삼나무, 잡목의 숲을 이루고 있다. 두 봉우리를 사이에 둔 굼부리는 북쪽으로 벌어졌고 두어 가닥의 작은 등성이is 뻗어 내리면서 그 사이마다 자그마한 골을 이루고 있다. 남동쪽 사면에서 오름 정상까지는 물론 굼부리 안에도 감귤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쉬 오를 수 있으나 자라난 나무로 인해 사방은 가려있다.

2) 삼

(1) 관전못(冠田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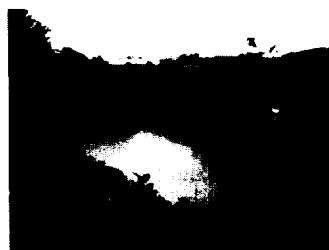
예로부터 마소에게 물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길을 넓히면서 현재는 크기가 1/2 이상 되어 있다. 둘레는 8m이다.



관전못

(2) 밧세미 1

중화동 식수로 사용되었으며 식수로 중요한 곳이었다. 둘레는 16m이다.



밧세미 1

(3) 한세미

구물동에서 식수로 사용했던 곳으로 오른쪽과 같은 모양이다. 못 두 개가 서로 이어진 형상이다. 두 곳 모두 둘레는 12m이다.



한세미

(4) 지세못

예전에 기와를 굽던 못으로 한세미, 밧세미에 비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다. 이 곳은 마소에게 물을 먹이던 곳이기도 하며, 목욕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세못

(5) 막가름못

큰 비가 오면 그 일대가 모두 물바다가 되고 도로에까지 물이 무릎 높이까지 친다. 그러나 막가름못에는 오랫동안 물이 잠겨

있지 못하고 금방 물이 빠진다. 이 못은 우마용 식수대로 사용되었다.

(6) 뱃세미 2



뱃세미 2

돌등이 웃 동쪽 100m 지점에 위치하며 동 개동, 신명동 일부가 식수로 사용하던 곳이다. 그 안쪽에 안세미란 못이 있는데 현재는 다 메워져서 흔적이 없다. 마소 식수용으로 사용됐던 고면이 못과, 식수로 사용했던 신명동의 세미 역시 현재는 흔적이 없다.

봉성리 저수지(貯水池)명

샘명(속칭)	비고	샘명(속칭)	비고
한세미3곳	구물동과 중화동민 使用食水	관전못	중화동 牛馬水用
바중이샘	구물동민 식수사용	막가름샘	서성동민 식수
지세나못	구물동 牛馬水	막가름못	서성동 牛馬水
괴맨이샘①	동개동민 식수용	방축샘	마전동 고도동민 식수용
괴면이못	동개동민 牛馬水	방축못	마전동 고도동민 牛馬水
괴맨이샘②	1952년도 施設 신명동 식수용	상수마루샘	상시동민 식수용
신명동못	신명동 牛馬水	오근다리샘	楮伊동민 식수용
관전샘	중화동민 식수용	셋샘	楮伊동민 식수용

(애월읍지)

4. 인문환경

1) 인구현황

봉성리의 전체인구는 총 464세대 1285명으로 남자 인구는 644명, 여자 인

구는 641명으로 성비가 거의 비슷하다.

세대	인구(명)		
	계	남	여
464	1285	644	641

(1005.12.31 봉성리사무소 제공)

2) 마을단체

마을운영의 구심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생단체로는 개발위원회, 부녀회, 노인회가 있다.

(1) 개발위원회

봉성리 개발위원회는 각 5개동 동장을 하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에는 이장의 임기가 끝나면 바로 개발위원회 회장이 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이장을 안 하신 분을 회장으로 뽑아 이장의 일을 보조하고 있다. 개발위원회는 5개동 동장(5), 감사(2), 고문 겸 자문위원(3)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용수 등 마을의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2) 부녀회

봉성리의 부녀회는 현재 25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65세 미만부녀자는 모두 자동 가입이 된다. 임원은 회장(1), 각 동 부회장(5), 감사(2), 총무(1), 각 동 동장(5)으로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상하반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그 이익금으로 노인회분들께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재활용품은 임원들이 날을 정해서 수거하며 각 동별로 집하하므로 모든 리민이 동참한다. 또한 어버이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각 동마다 1년에 한번 경로잔치를 할 때 후원금을 주기도 한다. 회칙은 특별히 따로 마련하지

않고 새마을 부녀회 회칙을 따른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봉성리 “부녀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부녀 복지향상을 기하고, 새마을정신의 생활화로 건전가정의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여 새마을운동의 영속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일반교양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업
2. 자녀교육에 관한 사업
3.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사업
4. 환경 및 의·식·주 생활개선(공동취사장 운영, 고정가구 부설 등) 및 가정의례 간소화에 관한 사업
5. 농촌영양개선사업
6. 부녀자 영농지도 사업
7. 농기계조작 사용 훈련 사업
8. 국민건강 및 국민영양사업
9.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에 관한 사업
10.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사업(예; 구판장 운영)
11. 농촌 볼지 문화사업
12. 협동 봉사서업(공동작업 실시 · 공동작업장 운영)
13. 농번기 유아원 운영
14. 저축사업(금고사업 · 절미저축 · 폐품수집)
15. 가정부업 및 공동부업 개발
16.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부녀새마을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봉성리에 둔다.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20세 이상 60세미만의 여성으로서 본 봉성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60세 이상은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권리 의무) 회원은 본 규약이 정한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미가 있다.

제7조(회원의 제명)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사업을 방해 또는 명예를 훼손한 회원은 결의에 의거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분) ①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2명
3. 감사 : 1명
4. 총무 : 1명
- 5.부장 : 약간명

② 본회에 회장(통장·반장)의 추대로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9조(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연 1회이상 본 회의 재산 및 사업운영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서무 및 경리를 처리한다. ⑤ 부장은 각 기능별 부서의 업무를 책임지고 적극 추진한다.

제10조(선출 및 임기) ① 본회의 회장·부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각 부장은 회장단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부서

제11조(조직) 본회의 사업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다만, 부서는 사업 확장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1. 저축부
2. 환경·생활개선부
3. 가족계획부
4. 교양활동부
5. 소득개발부

제12조(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저축부는 절미저축·마을금고·폐품수집센터 운영, 기타 소비생활 합리화 방안을 연구 추진한다.
2. 환경생활개선부는 환경개선·의식주 생활개선·영양개선·계절유아원 운영·구판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3. 가족계획부는 가족계획과 모자 보건에 관한 계몽지도 및 주민 보건관리에 관한 실천방안을 연구 추진한다.
4. 교양활동부는 가정의례 계몽 실천지도, 건전가정육성을 위한 각종교육, 농촌 복지문화사업, 사회봉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5. 소득개발부는 영농활동·부업개발·지역개발사업 및 기타 소득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총회와 월례회 및 임원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연1회 연도 말에 소집한다. ③ 월례회는 매월 ○일에 소집한다. ④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임원회의 구성은 회장·부회장·총무·각부장으로 구성함)

제14조(의결) ① 총회는 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승인 및 변경
2. 회장·부회장·감사의 선출
3. 결산 및 예산승인
4. 회칙통과
5. 임원 해임 및 회원 제명
6. 본회 사업의 기본방침 및 기금조성과 운용에 관한 결정

② 월례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전월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과 변경승인
2. 월별 추진사업의 결의
3. 월별 비용사용 승인
4. 지도자교육 차출에 관한 사항
5. 각종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임원회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안의 작성 및 보고
2. 월례회(임시회 포함) 의결사항에 대한 세부실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결과 보고
3. 기타 전체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긴급조치사항

제6장 회비 및 비용징수

제15조(회비 및 비용징수) ①본회는 제 3조 사업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월회비의 정수, 사업수익금의 일부, 공동기금 운용에 의한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②적립된 기금은 입원회의 결정에 의거 회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운용 관리해야 하며, 그 운용관리사항을 월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추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비용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거 적립기금에서 지출하되, 다음 월례회시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노인회

노인회는 현재 242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자격은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임원은 회장(1), 부회장(2), 총무(1), 감사(2), 이사(10)로 구성되어 있다.

3) 향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향약은 봉성리 향약이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향약은 본리 미풍양속의 전통을 계승하고 리정의 질서있고 정상적인 운영을 기하며 리민의 복지향상과 향리의 무궁한 번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사무소) 본 향약을 관장하는 사무소는 북제주군 애월면 봉성리 4129의 1번지 리민관에 둔다.

제4조(구역) 본 향약이 관장하는 구역은 북제주군 애월면 봉성리에 한한다.

제2장 향원의 자격과 의무

제5조(향원의 자격) 본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단, 3개월 이상 거주목적으로 전입자는 7일 이내에 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와 동시에 향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6조(향원의 권리) 향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회의 의결권

(2)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단, 의결권과 선거권은 20세 이상으로 하고 피선거권은 26세 이상으로 제한한다.(남,녀 구별없음)

제7조(향원의 임무) 향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1) 향약 준수 의무
- (2) 회의 결의 사항 준수 의무
- (3) 공동부역 이행 및 리정부담금 납부 의무

제3장 회의

제8조(회의) 본리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의 기구를 둔다.

- (1) 정기총회
- (2) 임시총회
- (3) 개발위원회
- (4) 동장회

가.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향원 50명 이상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리장이 소집하며 향원 30명 이상 참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1)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개발위원회에서 소집요구가 있을 때
- (3) 감사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 소집요구가 있을 때

단, 항상 개발위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 개발위원회는 리장 또는 개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로 개최한다.

라. 동장회는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한다.

제9조(의결 정족수)

각 회의는 전항에 명시된 개최 정족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되며 ‘가’, ‘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한다.

제10조(회의의 기능) 각종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 (ㄱ) 향약의 개정
- (ㄴ) 예산 및 결산 승인
- (ㄷ) 리장 및 임원선출
- (ㄹ) 사업계획 채택
- (ㅁ) 개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된 사항

(2) 개발위원회

- (ㄱ)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 (ㄴ) 사업 계획 수립
- (ㄷ) 리장 또는 개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된 사항
- (ㄹ) 총회의로부터 위임된 사항
- (ㅁ) 기타. 총회의 권한 외 필요한 사항

(3) 동장회의

총회 및 개발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한 집행 방법 및 세부사항 토의

제11조(회의 질서유지)

회의중에 폭행을 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케 할 시는 리장을 퇴장을 명하고 이를 이해치 않은 자는 향원의 명의로 고발한다.

제12조(회의록 비치)

모든 회의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1) 회순 및 출석인원

(2) 부의 안건 및 처리사항

제13조(임원) 본리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향장 1인

리장 1인

개발위원장 1인

개발위원 약간명

재무 1인

감사 2인

단, 총회의 결의에 따라 덕망 있는 향원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선출)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향장, 리장, 감사는 총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2) 재무, 개발위원회 위원은 총회의에서 선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때 각 자생단체의장 새마을 지도자는 개발위원회의 당연직 의원이 된다.
- (3) 개발 위원장은 개발 위원이 호선한다.
- (4) 퍼선거권이 있는 향원이 회의에 참석치 않아도 호선하고 선출되면 사양하지 못한다.

제15조(겸직금지) 임원의 겸직은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ㄱ) 리장은 개발위원장직을 겸직 할 수 없다.
- (ㄴ) 감사는 타의 여하한 임원도 겸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기능)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향장 : 향장은 리의 상식적 최고 지위로 리장 개발위원장 또는 위원회 감사의 자문에 응하며 재향을 주재한다.
2. 리장 : 리장은 리를 대표하며 리정 전반에 책임을 지고 리민 복지 향상과 리 발전에 최선을 다한다.
3. 개발위원장 : 개발위원회 이장이 되며 리장이 공백시는 일절 관장하는 과도적

책임을 지고 그 수습을 한다.

4. 재무 : 리 채산과 리공금의 관리자로써 리운영에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감사 : 리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발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리장 2년
- (2) 재무 2년
- (3) 개발위원 2년
- (4) 감사 1년

단, 향장의 임기는 제한 받지 아니하며 그 외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보선) 각 임원의 결원시는 다음과 같이 보선한다.

- (1) 리장 및 감사의 결원시 보선은 총회의에서 한다.
- (2) 재무 및 개발위원이 결원시는 개발위원회의에서 한다.

제4장 재정

제19조(재정) 리운영 재정은 재산수입 리무비(부담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20조(회계의 구분) 회계는 특별 회계와 일반 회계로 구분한다.

- (ㄱ) 특별회계는 고정자산 동산사업비 그 외 일반자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 (ㄴ) 일반회계는 단순 리운영 경상비로 국한한다.

제21조(재정관리) 특별회계의 관리는 재무가 관리하며 총회 또는 개발위원회 결의에 따라 리장의 명을 받고 운영하며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리장의 예산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22조(추가 경쟁 예산) 리장의 예상편성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요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자료를 개발위원회의에 제출 추가 경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감사와 징계

제24조(감사) 감사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실시하되 정기감사는 년 1회로 하고 수시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제25조(감사 자료 제출) 리장은 정기 감사를 받고자 할 때 수감통지서를 감사에게 하고 감사자료를 감사에게 제출한다. 수시감사는 감사의 자료요구에 의하여 리장은 지정기일까지 제시한다.

제26조(감사권의 제한) 정기감사는 수감할 의무를 지니나 수시 감사는 사전 그 사유를 향장 또는 개발위원장에게 통지하고 협의승인 후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다.

제27조(감사권의 표기) 지정된 일정에 감사는 감사를 하여야 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기피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감사의 감사권은 포기한 것으로 인정 리장은 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종결한다.

제28조(징계) 모든 임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며 총회 또는 개발위원회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 (ㄱ) 하등의 이유 없이 3회 이상 계속 회의에 불참 시
- (ㄴ) 직무 수행의 불가능 시
- (ㄷ) 향리 명예와 임원의 위신을 손상케 할 시
- (ㄹ) 형사 사건으로 입건 되었을 시
- (ㅁ) 그 외 총회 개발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시

제2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주의
- (2) 권고사임
- (3) 해임

제6장 공동묘지

제30조(위치) 다음의 장소를 봉성리 공동묘지로 한다.

- (1)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속칭 황생이풀
- (2)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봉성리 속칭 방측발

제31조(관리) 리장 책임하에 관리하며 관리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32조(묘지설치) 본리 거주민 이외의 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시는 즉시 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설치신고) 리민은 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리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금지사항) 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묘의 축장 시설 금지
- (2)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흙을 채취하는 행위
- (3) 방목 및 화입 금지

제35조(벌칙) 부당한 방법으로 분묘의 설치를 하거나 전항 제33조 제34조 1항 2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장 또는 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불응시는 총회의에 공개하여 처리한다.

제36조(예외규정) 재일교포가 귀국하여 설치시는 본거지로 할 수 있다.

제7장 잡칙

제37조(농산물 공판량 배정) 각종 농산물의 배정은 과종면적신고 30% 작년도 판매 실적 30% 리정호수 균등 40% 비율로 100% 배정한다.

제38조(이의신청) 전 제37조 배정량에 부당하면 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조정을 서면으로 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이의사정처리) 이의신청을 받은 이장은 동창회를 소집하여 이의내용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이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면 신청량의 배정량에서 30% 삭감한다.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할 수 없다.

제40조(도로보수) 리에서 각동별로 책정된 도로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수를 명할 시는 보수하여야 한다.

제41조(보수불이행처리) 책정된 도로를 하등의 이유 없이 보수치 않을 시는 개발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제42조(궐금징수) 공동 출역시 하등의 이유 없이 출역치 않을 시는 궐금을 징수, 리 수입으로 한다.

제43조(급료지급제한) 회장 리서기 급사 창고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를 태만할 시는 개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급료를 감봉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공금결손배상) 회장 재무서기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세입세출에 결손을 초래케 하였을 시는 3일 이내에 그 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45조(공공건물보존) 누구든지 공공건물을 훼손하였을 시는 안되며 과실로 훼손시킨 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46조(서류보존) 리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1) 각급 기관에서 시달되는 공문서 및 서류
- (2) 각종 건의서 및 보고서 사본
- (3) 자산 목록
- (4) 비품 목록
- (5) 지적도 및 지번별 조사
-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47조(서류의 폐기) 보존가치가 없는 서류는 회장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으나 그 목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사무인수인계) 사임 이장은 신임 이장에게 제반 사무를 철저히 인계하여야 하며 인수인계시는 개발위원장 및 각동 동장 입회하에 인수인계서를 작성, 인계한다.

제49조(포제 재관) 제향제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

제50조(도박금지) 모든 리민은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청소년 선도) 전리민은 누구든지 불량 청소년을 선도하고 청소년은 선도를 받아야 한다.

제52조(가정의례 준칙 준수) 리민은 의례준칙을 준수하여 간소하게 지내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상례시 음식물(골반, 떡 등) 분배 금지
- (2) 혼례시 혼식 이해
- (3) 혼상시 담례품 금지

제53조(축 우마 방목금지) 가로나 도로상에 축 우마를 방목하지 못한다.

제54조(밀월 장물 관리) 양봉업자들이 무단으로 당리지역에 침범할 시는 추방하고 리민 통행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리사무소에 거쳐 위치를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자는 3일 이내에 추방한다.

제55조(잡종지 관리) 국유 또는 리소유 잡종지를 침범하거나 무단사용자는 단속한다.

제56조(세칙 제정) 본 향약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개발위원회의에서 제정 이행한다.

제57조(부칙) 본 향약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 준례에 의한다.

제58조(시행일) 본 향약은 서기 1980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이상 -

4) 교육기관

봉성리의 교육기관으로는 어도초등학교와 초등학교 내 병설유치원이 있다.



어도초등학교

어도초등학교 연혁

연월일	내력
1923.04.01	보성서당 설립
1936.04.01	홍산국민학교로 교명 개명 보성서당 이설(애월읍 어도리 3821-2번지)
1940.03.01	애월 공립 심상초등학교 부설 어도간이학교 인가
1943.04.01	어도공립초등학교 인가
1943.06.03	개교
1949.01.26	4·3사건으로 교사 전소

1949.03.10	폐교
1949.09.01	복교 인가
1963.05.06	어음분교장 인가
1969.03.01	화전분교장 인가
1974.03.01	자활급식시범학교 (문교부지정, 제주도 제1호)
1978.03.01	본교 10학급 인가
1981.03.01	9학급 인가
1982.01.21	병설유치원 인가
1984.03.01	8학급 인가
1986.03.01	본교 8학급, 어음분교 3학급, 화전분교 1학급 인가
1988.03.01	부군 교육청 지정 과제시범학교(특활영어)
1990.03.01	화전분교장 폐장, 본교 6학급, 분교 3학급 편성
1992.03.01	본교 6학급, 분교 2학급 편성
1995.03.01	본교 5학급, 분교 2학급 편성
1996.03.01	어도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1997.03.01	본교 4학급, 분교 2학급 편성
1998.03.01	본교 5학급, 분교 2학급 편성
1999.03.01	본교 6학급 편성, 어음분교장 폐교
2000.10.29	학교 대수선 및 2층 5교실 증축
2005.09.01	제 24대 변영진 교장 부임
2006.02.09	제 55회 졸업(졸업생 총수 2,594명)

아동 현황

학년	1	2	3	4	5	6	계
학급수	1	1	1	1	1	1	6
학 생 수	남	7	12	6	13	14	59
	여	4	5	8	11	16	50
	계	11	17	14	24	30	109

교직원 현황

직위	교장	교감	보직 교사	교사	유치원 교사	일반직	기능직	영양사	조리사	특기 체성교 육강사	특수 교육 보조원	계
남	1	1	2	1			1					6
여				4	1	1	1	1	1	1	1	7
계	1	1	2	5	1	1	2	1	1	1	1	13

주요 시설 현황

교지				교사									부속건물					
총 계	대 지	체 육 장	감 귤 원	정 규 교 실	파 학 실	정 보 화 교 육 실	다 목 적 실	교 무 기 획 실	교 育 연 구 실	교 장 실	교 育 행 정 실	유 치 원 교 실	당 직 실	창 고	급 식 소	화 장 실	예 능 교 육 실	보 전 실
19,763 7m ²	3,186 m ²	14,08 3m ²	2,498 m ²	6실	1.5실	1실	1.5실	0.5실	0.5실	0.5실	0.5실	2실	1동	2동	1동	1(2층)	1동	0.28 실

5) 복지시설

봉성리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3년 10월 3일에 설치되었으며, 봉성리와 어음 1·2리까지 모두 3개의 리를 관할하고 있다. 총 6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인원은 연간 3000명 정도, 연인원은 160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라는 자체 기구를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이장이 운영협의회장을 맡고, 각 마을 단체장을 비롯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봉성리 경로당에서 진료를 실시하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고, 짬질팩과 마사지도 해 드리고 있다. 더불어 노인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다. 이 밖에도 전주민에게 무료 구충제를 나누어 드리고 있으며, 10월에서 12월 사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연말

에는 보건교육달력을 300부 정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여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충효교실에서 여름건강교실을 함께 실시하고 있다.

5. 산업환경

1) 삼리공동목장

몽고가 침입한 후 말을 목축하기 위해 제주의 여러 지역에 목장을 만들고 마을 사람들이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삼리 공동목장이 시작되었다. 목장 면적은 약 80~90만 평 정도이고, 목장의 범위는 궤오름부터 풍낭오름까지, 남쪽으로 새별오름 일부분을 포함한다. 1924년 일제시대 때, 세부측량을 한 후 마을 공동목장으로 지정되었다. 목장 형성 초기에는 어도리 주민의 목장 경영 능력 부족으로 꽉지, 금성리에 협조를 요청하여 공동으로 마을을 이용했다.

처음 조합원은 소수의 인원이었으나 현재는 10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의 가입 조건을 61년 이전 출생자로 제한한다.

당시 봉성리의 주된 산업은 축산업으로 말을 많게는 한 집에 50~60 마리 사육하기도 하였다. 휴농기에는 말을 목장에서 방목했었으나,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에 마을의 농상리에 동원하기도 했었고 품을 받아 빌려 주기도 하였다. 농사철이 지나면 다시 목장에서 방목을 하였다.

말 뿐만 아니라 소도 목장에서 관리하였다. 소는 보통 뱃갈쇠로 한집에 수소 한 마리를 사육했었으나 1950년대 후 1960년대 초 부터는 수소와 암소를 같이 사육했으며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그 수를 더 많이 소유하기도 하였다. 소는 농사일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테려다가 사용했다.

말의 경우 관리가 편리하여 주로 한 사람이 목장의 모든 말을 관리했다. 산간 지역에 풀이 부족한 11월 초에는 마을에서 산간지역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인접해 있는 몇몇을 밭을 통합하여 임시 목장을 만들어 관리

했으며 먹이로는 임시목장에서 자라는 풀을 이용했고 부족한 경우 임시 목장을 다른 곳에 다시 만들기도 하였다.

소는 목장 안의 출왓에 임시 거주지인 막을 지어놓고, 마을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서 막에 하루씩 상주하였다. 1인이 하루 정도 소비할 식량을 가지고 교대를 하며 소를 관리하였다. 또한 농경기에는 소의 먹이로 출을 사용했다. 주로 출은 손으로 베었는데, 약 1976년도에 예초기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우선 소를 데려가서 출을 다 비고 그 출을 소 등에 실어서 마을로 내려왔다. 거리가 먼 경우 마을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출을 모아 두었다가, 저녁에 소를 이용하여 모아 두었던 출을 모두 마을로 내려왔다.

출(억새)은 7~8월 사이 꽃이 피어 열매가 떨어지기 전에 다 베어야 소의 먹이로 좋은 출을 마련할 수 있다.

2) 친밭

친밭은 불모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짓을 수 있도록 했던 곳을 말한다. 주로 남자들이 개간을 하였는데 기울어진 곳을 계단모양으로 평평하게 하였다. 이 곳에서는 메밀, 산두(육두), 피, 지장 등 을 농사하였는데, 3~4년 정도만 농사 가 가능하였다.



친밭

봄에 친밭을 만들면 우선으로 음력 7월 경에 메밀 씨를 뿌린다. 거름은 주로 재를 사용하고, 김매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10월이 되면 수확을 하고, 휴농기를 거쳐 그 다음 해 3월에 산두나 육두, 지장, 피 등의 씨를 뿌리고 9월 하순에 수확한다.

3) 마을 농업

마을에서는 보리와 조를 재배하는데, 동시에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번갈아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보리는 9월에 씨를 뿌린다. 거름을 밟아서 그 위에 씨를 뿐하고 다시 밟는 과정을 반복해서 거름과 씨를 섞어놓는다. 그것을 삼태기에 담아 소나 말에 싣고 밭에 가면, 여자들은 밭을 갈기전에 우선 거름을 뿐린다. 그 다음 밭을 갈고 보리 씨를 뿐하고 흙으로 덮는다. 초벌 김매기는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사이에 하고, 두 번째는 3월 경에 한다. 대개 5월 27~28일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한다. 타작은 주로 집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보통 한 동에 2~3개씩 있는 연자방아에 가서 보리를 찧는다.

조는 6월 초에 씨를 뿐리는데 이 시기에 씨를 뿐려야 발아가 잘 된다. 씨를 뿐리면 말로 흙을 밟아주고, 쪽이 10cm정도 자랐을 때 풀어주고 김을 맨다. 대개 2번 정도 김매기를 한다. 7월 중순에서 하순사이에 마지막으로 김을 매고 9월에 수확한다. 수확한 조 역시 연자방아에 가서 찧는다.

6. 생활풍속

1) 혼례

혼인은 모두 중매결혼을 했으며 특별한 예식이 없다. 약혼식의 형태로 막펜지가 있었다. 신랑 신부 집에서 중매가 성사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막펜지를 가지고 신랑과 함께 신부 집에 간다.

결혼식 전날에는 친족들이 모여 가문잔치를 한다. 순대, 돼지고기를 접시에 조금씩 대접한다.

결혼식 날 아침, 신랑 집에서 예장을 쓴다. 함 안에는 예장, 실엉목(아기 기저귀감), 무명 등을 놓고 빨간 보자기로 '우물 정'자로 쌌다.

함우시가 출발하기 전에 문전 칠받상에 돼지머리, 과일을 놓고 배례해서 나간다. 함우시는 예장의 내용과 쓰게 된 연유를 아는 사람이 가져간다. 중간에 도구리(나무)를 놓고 소사(하인)가 말을 끌고 와 놓으면 신랑이 올라탄다. 대부분은 신랑이 타기 쉽게 왼쪽에서 올라탄다. 먼 거리일 경우에는 베로 치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것을 듈다. 출발할 적에 하인이 '허~엉'하고 신랑 출발 신호를 한다. 또한 신부 집에 도착하여서도 '허~엉'하고 도착 신호를 알린다. 신부 집에 갈 때에 '함우시-신랑-우시' 순으로 모두 말을 타고 간다. 이 때 우시는 외삼촌, 사촌, 성가의 동기 자매 등을 선발한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여 함우시가 함을 드리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신부 집에서는 문전 고사상이 다 차려져 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신랑의 도착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발 시간은 아침 일찍 가는데, 하루에 예식이 2~3곳이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지 늦으면 살림을 못한다고 한다. 보통 택일 날에 출발시간이 정해지는데 동네 잔치가 있을 때에는 새벽 1시가 되면 서로 앞다투어 출발한다.

신부집에 신랑이 도착하고 함우시가 함을 드리면 문전 고사상에 함을 올려 배례하고 함을 풀어 예장을 꺼내서 읽어본다. 그런 다음 중방이 나가서 신랑에게 절을 하고 악수를 하면 신랑이 들어가고 절을 안하면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다. 들어올 때에는 가례라고 마을마다 다르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원발을 먼저 마루에 올려놓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랑 방에는 중방이 먼저 들어가고 신랑이 따라 방에 들어간다. 중방이 오른쪽에 앉는다. 지금은 술상이 들어오지만 예전에는 작은 상에 밥, 국, 수저, 김치, 장 하나에 돼지고기 3점에 갈비하나 걸치고, 전 등이 차려진다. 통닭도 차려질 수 있으나, 형편상 그리지 못하였다. 중방이 신랑 상의 밥 뚜껑을 열어주고 수저로 밥을 3번 떠놓고 고기와 전도 조금씩 떠 놓고 상 아래에 놓으면 신랑이 식사를 시작한다.

식사가 끝나면 사돈들과 인사를 하고 신부 준비가 끝나면 신랑 집으로 출

발한다. 보통 집에 구들이 두 개 있다. 신부는 뒷 구들에서 준비한다. 신랑이 집에서 나가 말을 타면 가마가 신부 방 앞에서 신부를 태우고 출발한다. 신부가 신랑 집에 올 때에는 초석만 가져온다. 신부가 이불 준비를 하는데, 보통 1, 2개를 준비한다. 신랑 집에 도착하면 시어머니나 신랑 집 딸이 신부가 들어올 때 귀신이 따라 온다고 해서 팔을 뿌린다. 신부가 방에 들어오면 대개 고팽 쪽을 향해서 앉는데, 택일할 때 정해준 방향을 향해 앉는다.

신랑 집에 오면 신부쪽 대방이 있다. 이 대방은 신랑쪽 중방과 같은 임무이다. 대방이 오른쪽에 앉고 상을 받는다. 대방이 신부를 도와 식사를 끝내면 아이들에게 하인이 밥도 주고 계란도 준다. 신부가 식사를 끝내면 족두리를 벗고 신부복으로 갈아입는다. 신부복은 시어머니가 해준다. 대부분 신부복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관복 안에 입어 온 경우가 많아서 관복만 벗기도 하였다.

예식이 끝난 후 모두 저녁식사를 하고 신랑 친구들이 놀러 와서 신랑을 괴롭히면서 논다.

신부는 예식 날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시집에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친족들이 집에 놀러오면 신부를 인사 시켜주고 부조로 돈이나 옷감 등을 받는다. 예식 다음날 신랑, 신부가 하룻밤을 보내고, 신랑과 신부, 신랑 아버지가 잔치 날에 차렸던 돼지 앞다리 삶은 것, 술 두 되를 준비하여 신부 집에 간다. 그리고 친족들과 잔치를 한다. 신랑 아버지는 신랑과 신부를 두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시 신랑 집에 갈 때 신랑, 신부, 신부 아버지가 가서 인사하고 신부 아버지는 다시 돌아가며 신랑 집에서 잔치를 한다. 그 후부터 신랑, 신부는 이 곳에서 살게 된다.

시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독립할 때 부자인 경우 집을 마련해 주지만 보통 좋은 날을 정해서 밖거리에 시부모님이 솔, 냄비, 수저 둘, 젓가락, 그릇 둘, 물항아리 등을 마련해준다.

출산 때는 대부분 첫 얘기는 친정에서 출산하고 며칠 후에 아이를 시어머니가 구덕을 준비하여 데려온다. 출산하면 금줄을 걸고 상에 물 한 그릇, 쌀, 밥 3그릇 등을 넣고 신방에게 빌어준다.

2) 상례

부모가 만 60세가 되면 자식들이 환갑잔치를 해드리는데, 부모 각각 해드리는 경우도 있으나 아버지 환갑날 잔칫상을 어머니도 같이 받게 되므로 어머니의 환갑잔치도 같이 치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환갑잔치에 부모의 수의 같은 것은 따로 해드리지 않고 일가친척과 동네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른바 ‘먹는 잔치’일 뿐이라고 한다. 환갑잔치의 규모는 자식들이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하였으나, 현재의 환갑잔치는 예전처럼 돼지를 잡고 크게 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한다. 환갑을 맞은 집에 주변사람들이 특별한 부조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환갑잔치 후에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고 해서 마을행사에서 제외시키거나, 마을회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수의는 음력윤달이 들었을 때 본인이 직접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를 준비하는데 여자의 경우 ‘저승옷’이라 해서 두루마기에 여러 가지 색을 물들인 옷을 준비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방충제가 없었던 시절이라 수의는 담배를 종이나 천에 싸서 궤 속에 깔아놓고 수의를 보관하였다 한다.

부모가 임종이 가까워질 때 자식들은 관을 준비했는데 관은 관널 4장, 모메기, 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임종직전에는 흰죽을 물같이 묽게 쑤어다가 입에다가 수저로 떠 넣어 주기도 했으며, 솜이나 닭털을 코에 갖다대어 임종 했음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고개가 떨구어지고 수 분이 흘러 소생의 혼적이 없으면 소령절차를 시작했다.

소령은 사후에 경직이 생겨 시신이 구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발을 묶고 손을 가지런히 앞으로 모아서 묶었는데, 생전에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등이 구부러진 시신은 무거운 것을 시신위에 올려놓아 평기도 했다고 한다. 소령 후에는 택일을 하여 일지를 보아 진, 사, 해 일의 나쁜 날에는 시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만약 날이 대렵이 가능한 날이면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코와 귀를 명주솜으로 막고 수의로 갈아입힌다고 한다. 이 때 오낭(五囊)이라 하여 망자의 손톱, 발톱, 머리털을 잘라서 다섯 개의 주머니에 넣어둔다고 한다.

이 오냥은 하관한 후 명전을 깔기 전에 관위에 놓는다고 한다. 대렴할 때는 물에 불린 쌀 세 방울을 세 번 씩 시신의 입에 넣으며 “남남합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다. 그런후 검은 명주실로 머리에서 턱으로 빙 둘러 묶는다고 한다. 또한 찰떡 3개씩을 손에 쥐어주고 손을 베로 묶고, 시신 밑에 베를 깔고 시신을 얹은 후 다리쪽의 베에 구멍을 두개 내고 머리쪽의 베를 두 갈래로 찢은 다음 다리에서 머리로 시신을 감싼 후 머리쪽의 두 갈래의 베를 다리쪽의 구멍에 집어넣어 당겨서 묶는다. 이후에는 3장의 베를 시신밑에 놓고 베 양쪽에 갈래를 만들어 시신을 감싸서 묶는데 각각의 베를 3갈래로 하여 9번씩 묶든지 갈래를 다르게 만들어 7번씩 묶든지 한다고 한다.

칠성판에는 목수가 삼각형의 모양으로 두 번 끌로 쳐내 별 모양을 만들어 북두칠성의 모양을 만든다고 한다. 관에는 밀가루풀을 먹여 도배를 하고, 산사람의 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금’이라는 두 겹의 명주천을 간다고 한다. 시신을 관에 넣고 ‘천금’이라는 이불을 덮은 후 빈 공간에는 짚을 넣기도 하고 명주를 넣어 채웠다고 한다. 불교신자의 경우는 ‘다라니’를 넣어 공간을 채우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 후 관 두껑을 덮고 못질을 하는데 예전에는 나무못을 사용하여 못질을 하였다 한다.

입관 후에는 성복을 하는데, 성복이전에는 통두건을 쓰고 여자의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헤친다. 성복을 하면서 두건도 만들어 쓰고 곡을 하고 친족들에게 두건을 나누어준다고 한다. 상주는 성복을 하고 잔을 단잔을 올리고, 옆으로 선다. 옆으로 서는 것도 우측으로 서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예전에는 초헌관을 장남, 아헌관을 큰 며느리, 종헌관을 차남이 하였으나, 아들 3형제가 차례로 하기도 하고, 아들이 없을 경우 사위가, 결혼하지 않은 딸만 있을 경우는 딸이 상주를 하기도 한다. 곡을 한 후에는 일가 친족이 배례를 한다. 만약 날짜가 나빠서 입관을 못하는 경우에는 만약 오늘이 일포인 경우 대렴을 한 시신에 조문객이 한 번만 절을 한다고 한다. 또 망자가 집에서 죽으면 입관을 한 후 북쪽을 향해 망자가 입던 옷을 흔들며 망자를 부르는 ‘초혼’을 한다. 이 때는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으’ 소리를 먼저 내고 ‘어느 마을 훈장’, ‘누구 장인’, ‘아무개 부친’ 등이라고 부르며 망자를 부른 후 ‘복!’이라고 외친다. 이를 두 번 한 후 마지막에는 ‘복!복!’이라고 총 세 번을 부른 후 망자의 옷을 관위에 덮었다가 장지에 가서 하관하여 개판을 덮은 후에 태워서 묻었다고 한다.

관을 짤 때는 관 짜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망자의 사돈집에서 팔죽을 쑤어오기도 했으며, 일포 음식은 큰 땅이 준비하였다. 그래서 큰 땅을 ‘일포감’, ‘일포년’이라고 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포할 때도 축을 썼으며, 일포가 끝난 후 관을 들고 세 번 들었다 놨다한 후 관을 옆문을 통해 집 밖으로 내쳤다. 마루를 경유해서 관이 나가지는 않았으며 옆문이 없는 경우 창문을 통해, 정히 나갈 길이 없는 경우에만 마루를 통했다고 한다.

관은 상여에다 놓고 베로 묶는다. 상여 앞에는 큰 며느리가 ‘흔백상’을 지고, 상여는 상여꾼들이 메었으며, 상여 뒤에는 상주들이 곡을 하면서 뒤따랐다. 예전에는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갈 때 상여를 제대로 메고 가지 않는 장난을 쳐 상주들이 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망자가 병들어 죽은 경우에는 상여가 나갈 때 잡귀도 떠나가라고 그릇을 깨기도 했다. 상여를 이동시키는 ‘동관’을 할 때 상주들이 축을 고하였으며, 축이 끝난 후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었다. 상여 앞에 ‘설배’라고 하여 앞에 길게 메고 앞에서 상여꾼이 당기기도 하였다. 동관 후 장지에 도착하여 정해진 방향 쪽으로 가서 병풍을 치고 관을 내려놓았다.

하관시킬 자리는 관을 만든 목수가 관 넓이에 맞게 관이 들어갈 자리를 팠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관을 집어넣고 개판을 덮기 전 마지막으로 친족들이 곡을 한다. 개판을 덮은 후 초혼한 망자의 옷을 태우고 묻는다.

봉분의 크기는 가운데 흙을 덮기 시작할 때 중심에 나무를 꽂아 흙을 덮기 시작한다. 흙을 덮으면서 상주들이 ‘평토’를 하기도 하는데 선소리를 하는 사람이 평토노래를 하면 꽹이, 곡괭이, 망치를 가지고 빙빙 돌면서 ‘애ه 평토야’라고 후렴을 하면서 땅을 다졌다. 봉분의 모양은 평토를 하면서 중앙에

대나무를 꽂아 실을 매어 6치를 채어 빙 둘러가며 봉분을 만드는데 봉분 전체를 둑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용미(龍尾)’라 하여 처녀의 뮤은 뒷머리 모양처럼 약간 잘록하게 만들며 봉분의 크기는 상주의 청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 봉분을 만든 다음에는 폐가 잘 불도록 들이 없는 고운 흙으로 봉분 전체를 덮기도 한다고 한다.

산담은 봉분을 하기 전에 미리 만들거나 봉분한 후 하기도 한다. 산담 오른 쪽 끝에서 토신제를 지낸다. 산에서 초우제를 지내고, 재우, 삼우제는 집에서 지내고 졸곡을 한다.

3) 제례

우선 음식으로는 친떡, 인절미, 세미떡, 곤떡, 반월, 우찌 등의 떡을 준비하였다. 인절미는 예전에는 메밀로 만들었으며, 세미떡은 동그란 모양에 가운데 팥이 들어간 것이다. 곤떡은 쌀로 둑그렇게 만든 것이고, 반월은 반달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우찌는 떡 위에 계란을 둑그렇게 지져서 덮은 것이다. 떡은 주로 메밀이나 보리로 만들었는데, 떡판에다 찍어서 모양을 만들거나, 글씨를 새기기도 하였다. 초상 때에는 별떡을 만드는데, 색소로 자리공이라는 빨간 열매를 이용하여 물들이기도 한다.

채소는 콩나물과 고사리 정도를 준비한다. 콩나물은 집에서 직접 키운 것을 쓰는데, 콩나물 대용으로 녹두나 메밀을 올리기도 한다. 고사리는 꺾어온다. 고사리는 깨끗한 채소이기 때문에 제사 상에 올리는 것인데, 이 때, 산소 아래 고사리는 꺾지 않는다. 이 밖에도 호박, 텡쉐 등을 올린다.

또한 노루고기와 쇠고기로 적을 준비한다. 이 때,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꼬치에 적을 6개씩 끼우기 때문이다. 두부적이나 묵적은 4개씩 꽂는다. 적은 돼지고기적 1개, 쇠고기나 노루고기적 1개, 두부적이나 묵적 1개를 올린다. 고기는 솔도에서 잡는데, 예전에는 고기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리 연락하여 소나 돼지를 잡으면,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놓는다.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놓기도 한다. 생선 역시 구하기 어려우면 갈치를 구해서 올리기도 했다. 과일 또한 구하기가 쉽지 않아 흔히 나는 유자를 올렸다. 정월 명절에는 사과, 배 등을 사서 올리기도 하였다.

제사 절차로는 우선 집사가 절을 하면 상현관이 들어온다. 동배하고 초현이 절을 하여, 술을 잔에 붓고 이 잔을 집사에게 주고 다시 공동으로 배례한다. 다음으로는 초현이 끓어았고, 술을 잔에 붓는데, 이 때 할아버지에서 할머니 순으로 한다. 잔을 현관이 받아서 상에 올린다. 그 다음 아현이 개지를 열고, 종현이 수저를 꿋는다. 그 이후에 3현관이 모두 술을 올리고, 첨작이 술을 올리고, 첨작이 동배한다. 그리고 나서 승능을 올리고 상 앞에 현관과 그 뒤로 집사가 모두다 같이 2~3분간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다. 그 다음 채소와 술을 올리고, 음식들을 승능 그릇에 조금씩 떼어 놓고 승능 그릇을 앞에 갖다 놓는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배례하고 철상을 한다.

이러한 절차는 명절, 묘제 때에도 같다. 현관 순서는 대수 순으로 하는데, 종손이 성장한 경우는 종손이 초현, 부친이 아현관을 서는 경우도 있다.

7. 비석

1) 효자비

- 연주 현씨 가선대부 원상(숙종 계사 서기 1713년 12월 9일생) 해설문
공은 고려대장군 문하 시랑평장사 연산부원군 휘담윤의 19세손이며 입도
시조 휘사경의 11세손이다 그의 부친은 덕완이요 모친은 홍양송씨이다. 이
조 숙종39년 12월 9일에 어도리에서 태어났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봉양
하되 조석에 시간을 어기지 않고 부모님께 문안을 드렸으며 부모의 뜻을 거
역하는 일이 없었고 잘 받들었다. 부모의 병환시는 정성을 다하여 약시중을
드렸으며 심지어는 대변의 맛을 보아 병증세를 진찰하였다. 주야 걱정 수심



효자비

으로 천지신명께 부모의 병이 쾌유를 기도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니 슬픈 마음이 비할 데 없고 원통한 나머지 실신하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무덤곁에 초가집을 짓고 살면서 삼년간이나 한결같이 동소를 살피고 삭망제사에 목욕재계한 후 정성을 다하여 제를 지냈다. 홀연히 일기가 불순하여 삭망에 쓸 희생물을 얻지 못했으므로 하늘을 우러러 슬퍼하고 있었는데 돌연히 산장 한 마리가 와서 무덤 앞에 엎드렸다. 공은 그것을 잡아 삭망에 바쳤다. 그것을 안 당시 사람

들이 모두 탄복하기를 공의 정성은 참으로 천지신명이 감동한 것이라고 하였다. 공은 재산이 풍부해서 항시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간난한 백성을 구제하니 아사를 면했으며 남에 대한 인자한 마음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이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다. 순조22년에 목사 이원필은 이 사실을 알고 조정에 알려 표창하고 종이품인 가선대부 벼슬을 주었으며, 공의 정조21년(서기 1797년) 4월 22일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가 팔십오세였다. 종손인 영집의 처 김해김씨도 역시 효부열녀를 겸한 여성이라고 칭찬하니 참으로 공의 남겨놓은 덕화인 동시 선조들이 적선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이 기록은 삼강록 및 제주도지에 있음). 그리고 효자비가 구물동에 세워져 있다.

(애월읍지)

2) 열녀비

· 진주 강씨 위보 처 군위오씨 해설문

학생 강위보 처 군위오씨 본관은 군위요 강위보처이다. 납폐전 삼개월 앞서 위보가 갑자기 죽으매 거상복하였으나 나이 어리고 자식이 없었다. 인자

(仁者)는 성하고 쇠함을 갖추고 절재를 바꾸지 않으며 의자(義者)는 존망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오직 사람들이 의자가 퇴폐함을 두려워함이요 어찌 버리는 것을 참으리오. 사람이 금수와 다른 점은 그 인의가 있는 것이니 내가 어찌 금수의 행동을 하리오 하여 자결함에 갑신(서기 1884년) 완문이 내렸다. 세월이 오래어 완문을 찾으니 없어 어찌 슬프지 않으랴. 여기에 정려를 세우는 바이라(이 기록은 삼강록에 있음).

열녀비



(애월읍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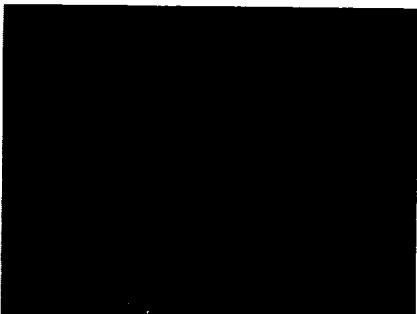
8. 세시풍속

1) 1월

① 정월명절 : 음력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세배를 간다. 세배는 친척집을 포함하고 이웃 어른 집과 상을 지내는 집(탈상전이어서 상식을 하는 집)에도 간다. 시루떡, 군떡, 반달과 달 모양의 떡을 해 먹고 설빔은 집에서 광목·무명으로 지어 입는다. 놀이는 특별한 것이 없으며 주로 연날리기, 제기차기 등을 한다.

② 대보름 : 못된 악귀나 액운이 오지 말라고 점을 쳐서 좋지 않은 점괘가 나오면 시루떡을 끊어서 던진다. 육을 들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정낭을 물에 빠뜨리거나 하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정월 명절에 날린 연의 줄을 끊어 액운을 날려 보내기도 한다.

③ 마을 포제 : 마을의 평안을 빌기 위해 음력 정월 입춘이 지난 정일, 해일



봉성리 포제단

을 택해 어도봉의 포제단에서 제를 올린다. 제관은 마을에서 초현·아현·종현·집례·대축을 뽑고, 그 외의 봉향, 봉로 등은 집례가 정한다. 예전에는 일주일 정도 마을에서 제일 깨끗한 집(향사)에서 제관들이 일주일정도 합숙을 하여 몸·마음을 깨끗이 하고 제를 올렸으나 요즘은 3일 정도로 간소하게 한다. 포제

단 2개에 돼지 2마리나 닭을 올리는 데 돼지는 불에 닿지 않게 하여 통째로 올리고 털과 피를 회생으로 올린다.

2) 2월

① 영등 : 영등 하르방이 오는 날이다. 해안 마을이 아니라서 특별히 제를 올리지는 않는다. 밖에다 빨래를 널면 벌레가 집안에 많이 들어온다 하여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게 하고 사흘정도 머리에 비눗물을 하지 않으면 벌레가 적게 온다고 한다.

② 입춘 : 새칠 드는 날로 여자가 남의 집에 가면 동티가 난다고 하여 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청소를 하지 않는다.

③ 신구간 : 대한 5일 후부터 입춘 전 3일, 총 7일간이며, 묵은 귀신은 올라가고 새 귀신이 내려오기 전에 이사를 하거나 집을 고쳐 해도 동티가 나지 않게 한다. 특별히 금하는 사항은 없다.

3) 3월

① 묘제 : 집안마다 다르고 특별한 날짜가 정해지지도 않았다. 큰집만 지

내기도 하며 벌초 후 제사 음식도 별 다른 게 없다.

② 고사리 꺾기 : 묘제 가서 꺾어오기도 하고, 가까운 사람끼리 모여서 가기도 한다.

4) 4월

① 망종 지신밟기 : 모든 풀이 다 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 하기도 하였다.

② 한식 : 옛날에는 설, 추석, 단오와 다름없이 지냈지만 요즘은 농사일로 바쁘기 때문에 거의 지내지 않는다.

5) 5월

① 단오 : 사람들이 보리농사로 바빠서 특별히 크게 지내지 않고, 간단하게 차례를 지낸다. 특별한 놀이나 음식이 하지 않는다.

6) 6월

① 갈중이 만들기 : 풋감을 따서 갈아 미리 만들어 놓은 광복옷에 물을 들인다. 음력 7월 전에 만들어야 하는데 7월 이후는 열매에 신경 쓰는 시기라고 한다.

② 닭 잡아먹는 날 : 요즘은 초복·중복·말복을 챙기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유월 스무날’에 닭을 잡아먹었다. 19일에 닭을 잡아 20일에 식구마다 닭을 먹었다.

7) 7월

① 백중 : 여름에 일하다 땀띠가 났을 때 주로 금성, 명월 등에 물을 맞으

러 갔다. 제를 지낼 때 돼지 · 소 같은 육고기는 금지하고, 생선을 올렸다.

② 개역 : 콩과 보리를 뿐아서 같아 만들었다.

8) 8월

① 소분 : 팔월 초하루에 벌초하러 간다.

② 추석 : 차례를 지내고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③ 말똥 줍기 : 소똥보다 말똥이 화력이 더 좋아 말똥을 주워 구들 땔감으로 사용한다.

9) 10월

① 지붕이기 : 보리농사가 끝날 때까지 새를 베지 못하게 하여서 새 도둑 방지하였다. 보리농사가 끝나면 새 해경을 하여 새를 벨 수 있었고, 수눌음으로 이루어졌다. 특별 기술이 필요한 일은 사람을 빌어서 바람 없는 날, 날을 잡아서 이루어졌다.

10) 11월

① 동지 : 팔죽을 쑤어 먹었으며, 액운을 막고 감기를 예방한다고 생각하여 집안에 뿌리고 대문에 바르기도 하였다.

② 메주 삶기 : 콩을 삶을 후 으깨서 메주 모양을 다듬어서 걸어놓았다. 새 지붕을 이은 후 메주를 삶는데 좋은 날을 골라서 하였고, 콩은 삶고 장 담그기까지 한달이 걸린다고 한다.